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귀책사유 있는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부의무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44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귀책사유 있는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부의무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19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귀책사유 있는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부 의무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 법에 따른 변제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¹⁾ 이는 국가의 특유한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원활한 수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한편 2026. 5. 12. 시행 예정인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인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변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

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음.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인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있어 법인의 재산으로 전액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과 유사하게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의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변제금 납부책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근로자가 법인에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것인데, 그 채권에 대한 대위행사 절차에서 자연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를 법인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피대위권리인 임금채권의 권리자인 근로자에 비해서도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이라는 표현은 체불 발생 시점과 귀책사유의 시점 및 귀책사유 존부 등에 대해 해석의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는바, 예컨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개별 의사결정이 임금 체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개정안 부칙 제2조 단서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한 체

불 임금등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 등 체불의 발생 당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체불 및 부과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법인격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점주주 등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 등에 비추어 공익상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도 공법상 조세 채무에 대한 것인데 사인간 근로계약에 근거하는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구조를 가지는 변제금 채권에 직접 제2차 납부의무가 설정될 경우 법률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 다른 채권과 달리 국가가 대위행사하는 임금채권만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예외로 두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체계상 정합성을 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변제금에 대하여 별도의 공법상 명령으로서 구상명령 등을 신설하

는 등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이라는 문언과 관련하여서는 ‘체불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기준이 정립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마다 ‘체불 발생 시점’이 다르게 되면 변제금 납부의무 부과 대상을 특정하는 것의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귀책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역시 곤란한 측면이 있어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칙 제2조 단서의 소급입법 조항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한편 법무부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법인 출자자의 변제금 제2차 납부의무를 정하였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809호)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 증권성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한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538